#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 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 백종헌・이헌승・김성원

김석기 · 김태호 · 박덕흠

박충권 • 이인선 • 정희용

박정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.

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,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)

##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2항) 중 "지정하거나 변경하면"을 "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까지의 규정에"를 "제9항까지에"로, "지정절차"를 "지정·변경절차"로, "기준에"를 "기준 등에"로 한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요건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 청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 호구역 지정 변경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련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수도사업자 또는 주민 등의

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 "(주민지원사업)"을 "(주민지원사업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지역 개발사업 실시에 지장이 크다고 판단하면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제83조제1호 중 "제7조제3항"을 "제7조제7항"으로, "제4항에"를 "제8항에"로 한다.

제87조제4항제1호 중 "제7조제4항"을 "제7조제8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   |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상수원보호구역         | 지정 | 등) | 제7조(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)          |
| ① (생 략)             |    |    |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   |    | ② 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재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.      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   |    | ③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<u>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</u>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<u>상수원보호구역이 제2항에 따</u>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환경부장관에게 그 상수원보호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<u>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</u>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<u>있다. 다만, 주민 3분의 2 이상</u>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구역 지정 변경을 환경부장관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   |    | 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관은 관련 시·도지사, 시장·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<u>군수⋅구청장, 수도사업자 또는</u>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           |

# <신 설>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<u>지정하거나</u>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 야 한다.

#### ③ ~ ⑤ (생 략)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,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<u>(주민지원사업)</u> ①·② (생 제략)

<신 설>

|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
|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⑥</u>  |
| <u>지정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검토 결과를  |
| ·.  |
| $\underline{7} \sim \underline{9}$ (현행 제3항부터 제5 |
| 항까지와 같음)  |
| <u> </u>  |
|   |
| 지정·변경절차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 등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
| 9조 <u>(주민지원사업 등)</u> ①·②                        |
| (현행과 같음)  |
|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수용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관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③ (생 략)

제8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<u>제7조제3항</u> 또는 <u>제4항에</u>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

1의2. ~ 11. (생략)

제87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
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- 2. ~ 9. (생략)
- ⑤ (생략)

|   | 실시에 지장이 크다고 판단하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| 면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   |
|   | 와 협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               |
|   | 거나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               |
|   | 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|
|   | 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          |
| 제 | 83조(벌칙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1. <u>제7조제7항</u> <u>제8항에</u> -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1의2. ~ 1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
| 제 | 87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           |
|   |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<b>4</b>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1. <u>제7조제8항</u>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2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|
|   |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|